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김 찬 희 소유물건
(2025타경9009)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손종욱

감정평가서번호: 별빛2508-22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转载)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빛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

광

호



| | | | | | | |
|----------------------------|-------------------------|-------------|------------|-------------|------------|-------------|
| 감정평가액 | 이천구백만원정 (₩29,000,000.-) | | | | | |
| 의뢰인 |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손종욱 | | 감정평가 목적 | 경매 | | |
| 제출처 | 경매1계 | | 기준가치 | 시장가치 | | |
| 소유자 (대상업체명) | 김찬희 (2025타경9009) | | 감정평가 조건 | - | | |
| 목록표시 근거 | 귀제시목록 | | 기준시점 | 조사기간 | 작성일 | |
| 기타 참고사항 | - | | 2025.09.01 | 2025.09.01 | 2025.09.02 | |
| 감 정 평 가 내 용 | 공부(公簿)(의뢰) | | 사정 | | 감정평가액 | |
|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단가 | 금액 |
| | 아파트 | 1세대 이 | 아파트 하 | 1세대 여 | - 백 | 29,000,000 |
| | 합계 | | | | | ₩29,000,0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 | | | | |
| " 별 지 참 조 " | | |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소재 “복성네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우영아파트 제101동 제4층 제401호” 단위세대로서, 대구지방법원(경매1계)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인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감정평가 방법

가) 본건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규 및 규칙, 감정평가의 일반이론 등에 따라 감정평가하였습니다.

나) 본건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본건은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과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로 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대상물건은 소유권 대지권과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구분건물로서 대상물건의 특성상 주된 감정평가방법 외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수익환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생략하였습니다.

5. 감정평가 근거법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9월 01일 입니다.

7. 실지조사 ·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2025년 09월 01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으며, 실지조사시 목록표시근거 상의 공부 및 의뢰된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물건의 현황, 대상물건의 특성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8. 그 밖의 사항

- 가)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또한 일반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하여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나, 경매진행시 참고를 위해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집합건물 구분평가지 토지, 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지침” 및 지역적 특성, 대상 부동산의 성격 등에 의거하여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에 부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건의 내부구조, 마감상태 등은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하여 동류형 물건의 통상적인 이용상황 등을 기준하였으며, 본건의 위치확인은 건축물 현황도, 현관 출입문의 표시등에 의거 확인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대상 부동산의 개요

【일련번호 1)】

| | | | | | |
|-------------|---|----------------|------------------|-----------------|-------------------------|
| 소재지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506-1, 506-2번지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15길 38) | | | | |
| 건물명 /동,층,호수 | 우영아파트 제101동 제4층 제401호 | | | | |
| 용도 등 | 용도 | 사용승인일 | 용도지역 | 세대수 | 층수(지하/지상) |
| | 아파트 | 1992.06.05 |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 190세대 (총5개동) | -/5 |
| 면적 | 전유(㎡) (A) | 주거공용(㎡) (B) | 전체(㎡) (A+B) | 대지권 (㎡) | 공동주택가격 (원,2025.1.1.) |
| | 76.56 | 7.291 | 83.851 | 65.04 | 17,900,000 |

III. 감정평가액의 산출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거래사례의 선정

가)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 기호 | 소재지 | 건물명 동/층/호수 | 전유면적 (㎡) | 거래금액(원) (단가, 원/㎡) | 거래시점 | 비고 |
|----|----------------|-----------------------------|-------------|----------------------|------------|----|
| | | | | | 사용승인일 | |
| A | 복성리 506-1 외 | 우영아파트 제102동 제3층 제3**호 | 76.56 | 31,000,000 | 2024.11.15 | |
| | | | | (405,000) | 1992.06.05 | |
| B | 복성리 506-1 외 | 우영아파트 제101동 제3층 제3**호 | 76.56 | 29,000,000 | 2025.03.06 | |
| | | | | (379,000) | 1992.06.05 | |
| C | 복성리 506-1 외 | 우영아파트 제106동 제3층 제3**호 | 68.19 | 30,000,000 | 2025.03.25 | |
| | | | | (440,000) | 1992.06.05 | |

- 거래단가 : 전유면적 기준
- 자료출처(실거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나) 인근지역 평가사례

| 기호 | 소재지 | 건물명 동/층/호수 | 평가 목적 | 전유면적 (㎡) | 평가가액(원) (단가, 원/㎡) | 기준시점 | 비고 |
|----|----------------|-----------------------------|----------|-------------|----------------------|------------|----|
| a | 복성리 506-1 외 | 우영아파트 제105동 제3층 제3**호 | 공매 | 50.58 | 22,500,000 | 2023.08.29 | |
| | | | | | (445,000) | | |
| b | 복성리 506-1 외 | 우영아파트 제106동 제5층 제5**호 | 경매 | 68.19 | 32,000,000 | 2024.10.07 | |
| | | | | | (469,000) | | |

- 평가단가 : 전유면적 기준
-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다)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거래가격수준

| 지리적 위치 | 이용상황 | 가격수준(전유면적기준) | 비고 |
|----------------|--------------------------------|--------------------------|-----|
| 인근지역 | 아파트 | @360,000 ~ @460,000(원/㎡) | 기준층 |
| 가격수준에 관한 의견 | 위치, 층별 및 호별 효용에 따라 가격편차가 나타납니다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경매 동향

| | |
|---------|----------------------------------|
| 지역 / 기간 | 경상북도 칠곡군 / 2024년 08월 ~ 2025년 07월 |
|---------|----------------------------------|

| 구 분 | 낙찰가 | | | 낙찰건수 | | |
|------|----------------|----------------|--------|------|------|------|
| | 총감정가 | 총낙찰가 | 낙찰율(%) | 총건수 | 낙찰건수 | 율(%) |
| 집합건물 | 4,791,000,000원 | 3,781,925,694원 | 78.9 | 106 | 42 | 39.6 |
| -아파트 | 3,762,000,000원 | 3,061,514,905원 | 81.4 | 83 | 33 | 39.8 |

◎ 자료출처 : 인포케어

마) 비교사례의 선정

위 거래사례 중 대상물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 A】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 기호 | 소재지 | 건물명 층,호수 | 전유면적 (㎡) | 거래가격(원) (단가,원/㎡) | 거래시점 | 비 고 |
|----|----------------|-----------------------------|-------------|---------------------|------------|-----|
| | | | | | 사용승인일 | |
| A | 북성리 506-1 외 | 우영아파트 제102동 제3층 제3**호 | 76.56 | 31,000,000 | 2024.11.15 | |
| | | | | (405,000) | 1992.06.05 | |

3. 사정보정

위 비교사례 물건은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치수준 대비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시점수정

가) 개 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동향)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해당 월의 가격지수가 미고시된 경우 직전 월의 가격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나) 시점수정치 내용(거래사례 기준)

| 지 역 | 시점수정치 | 시점수정치 산정 |
|---------------------------------|---------|--|
| 경상북도 칠곡군 (24.11.15~25.09.01) | 0.98008 | 거래시점 : 2024.11.15, 2024년 10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5.09.01, 2025년 08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이전 이므로 2025년 07월 지수를 적용 함 2024.11.15 매매 가격지수(적용: 2024년 10월) : 100.4 2025.09.01 매매 가격지수(적용: 2025년 07월) : 98.4 시점수정치 : $98.4/100.4=0.98008$ |

- 시점 수정치 : 소수점 6째 자리에서 사사오입
- 기준시점 지수 : 시점 당시 최종 발표된 지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가치형성요인 비교

[기호 1 : 비교사례 A]

| 조 건 | 구 분 세 부 항 목 | 격 차 율 | | 비 고 |
|----------------|-----------------------|-------|------|--|
| | | 비교사례 | 대상물건 | |
| 단지 외부 요인 |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 1.00 | 1.00 | 대상과 사례는 동일단지 내에 소재하여 외부요인 대등합니다. |
| | 교육시설 등의 배치 | | | |
| |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 | | |
| | 차량이용의 편리성 | | | |
| |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 | | |
| |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 | | |
| 단지 내부 요인 | 시공업체의 브랜드 | 1.00 | 1.00 | 대상과 사례는 동일단지 내에 소재하여 내부요인 대등합니다. |
| | 단지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 | | |
| |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 | | |
| |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 | | |
| |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 | | |
| |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 | | |
| 호별 요인 | 층별 효용 | 1.00 | 0.97 | 대상이 사례보다 층별 효용(4층/3층)에서 열세 합니다. |
| | 향별 효용 | | | |
| |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 | | |
| | 전유·공용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 | | |
| | 내부 평면방식(베이) | | | |
| |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 | | |
| 기타 요인 |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0 | 1.00 | 대등합니다. |
| 누 계 | | 0.970 | | |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의 결정

| 기호 | 거래사례 (원/㎡) | 사정 보정 | 시점 수정 | 가치형성 요인비교 | 전유면적 (㎡) | 산출가액 (원) | 결정가액 (원) |
|----|---------------|----------|----------|--------------|-------------|-------------|-------------|
| 1 | 405,000 | 1.00 | 0.98008 | 0.970 | 76.56 | 29,477,470 | 29,0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및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액

| 기 호 | 건물명 동/층/호수 | 전유면적(m ²) | 감정평가액(원) | 비 고 |
|-----|-----------------------------|-----------------------|------------|-----|
| 1 | 우영아파트 제101동 제4층 제401호 | 76.56 | 29,000,000 | |
| 합 계 | | | 29,000,000 | |

2. 결정 의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에 근거하여 비교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거하여 산정한 금액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 별첨 면적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감정평가액 | 비 고 |
|----------|--|-------------------------------|-----------------|------------------------|---------|-------|------------------|-----|
| | | | | | 공 부 | 사 정 | | |
| 1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 506-1, 506-2 우영 101동 | 공동주택 (아파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 | | | |
| |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15길 38 | | | 1층~5층 각 | 832.8 | | | |
| | | | | 관리사무소 | 18 | | | |
| | | | | 노인정 | 40 | | | |
| | | | | 지하펌프실 | 40 | | | |
| | | | | 수위실 | 4.41 | | | |
| (1)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 506-1 | 대 |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 5,627 | | | |
| (2) | " | 506-2 | 대 |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 6,175 | | | |
| | | | (내) | 철근콘크리트조 4층 401호 | 76.56 | 76.56 | 29,000,000 | |
| | | | (1),(2) | 소유권 대지권 | 65.04 | 65.04 | | |
| | | | | | 11,802 | | | |
| | | | | | | | 배분내역 | |
| | | | | | | | 토 지 : 14,500,000 | |
| | | | | | | | 건 물 : 14,500,000 | |
| | 합 계 | | | | | | ₩29,000,000.- | |
| | | | 이 | 하 | 여 | 백 | | |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소재 "복성네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우영아파트 제101동 제4층 제401호" 단위세대로서, 부근은 중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북측 인근 간선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1동 지상 5층건 중 4층 401호 단위세대로서
사용승인일은 1992.06.05일이며
외벽 : 몰탈위 페인트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바닥 : 장판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입니다.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방3, 거실, 주방, 욕실2 등으로 조사됩니다.

(5)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지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부근은 북측 하향의 완경지이며,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 아파트단지 동측으로 왕복 2차선 진입도로와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2): 공히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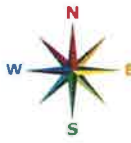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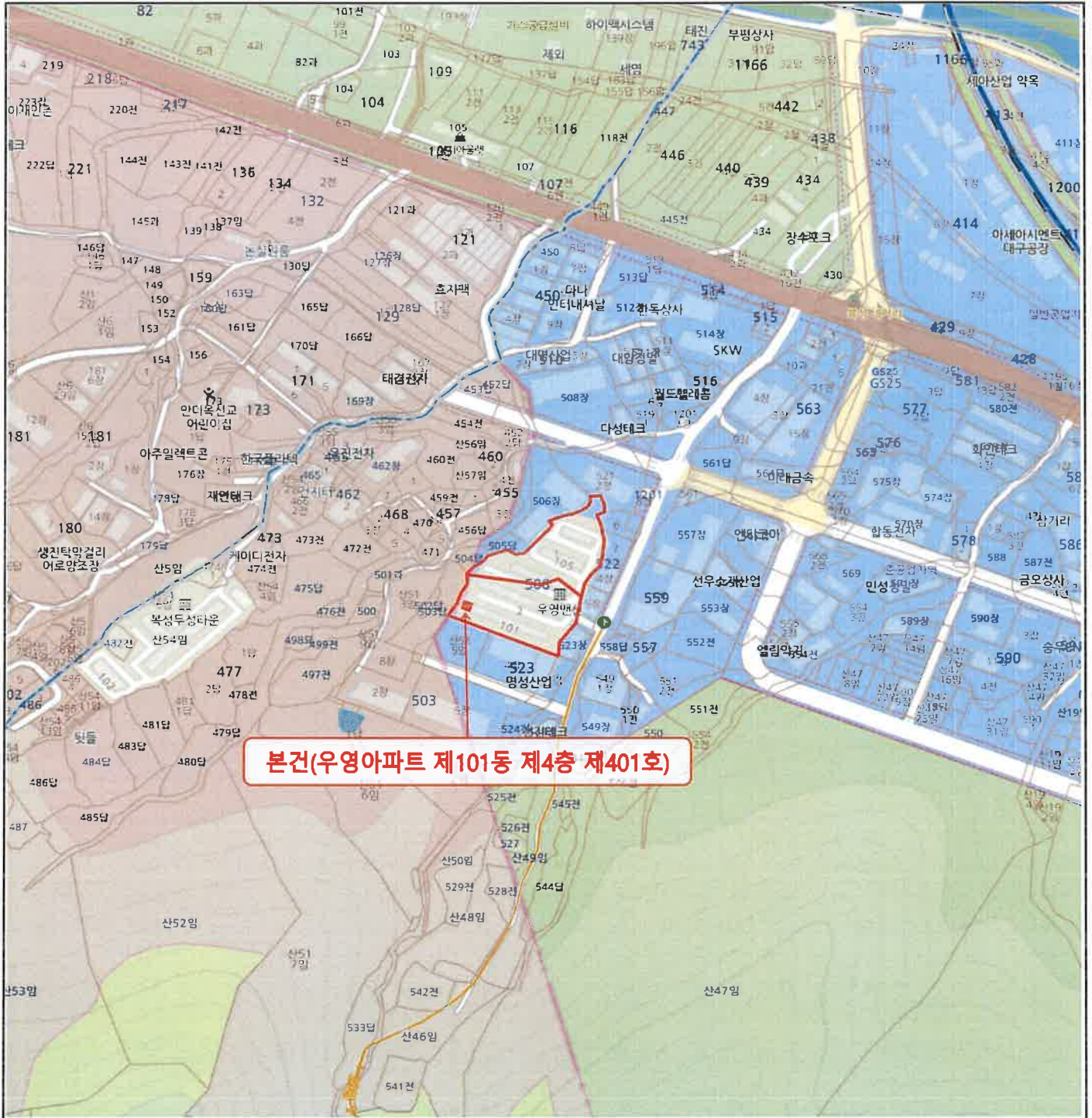
2)기 타 : 본건의 내부구조, 마감상태 등은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하여 동류형 물건의 통상적인 이용상황 등을 기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506-1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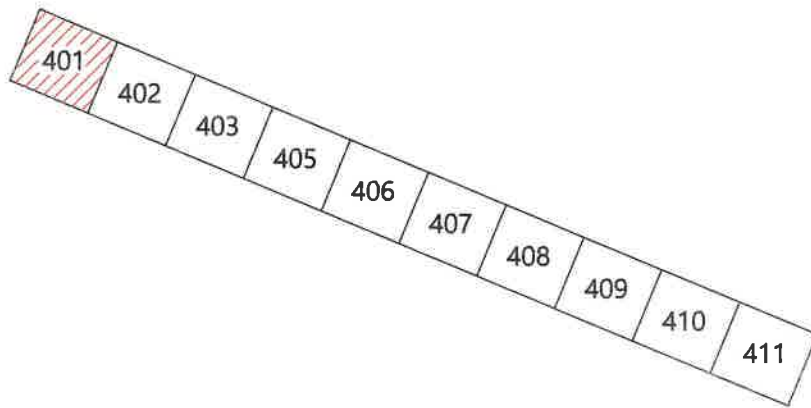


본건(우영아파트 제101동 제4층 제401호)

호 별 배 치 도

No scale

[101동]



본건(우영아파트 제101동 제4층 제401호)

사 진 용 지



본건 소재 동 전경(북동측에서 촬영)



본건 현관문